

농촌협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464
------------	-----

제안연월일 : 2025. 8. .
제 안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에 농촌협약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군민과 행정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협약 및 농촌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 위탁기간('23. 1. 11. ~ '25. 12. 31.) 만료에 따라 평창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재계약을 추진하여, 위탁사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의회의 동의)에 따라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농촌협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대상사무)

○ 필요성

- 평창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은 2022. 7. 15. 우리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체결한 “농촌협약”의 필수적 요소로, 주민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 등 위탁사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평창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

○ 위탁내용: 농촌협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 전반

- 지역 내 농촌협약 추진 주체의 육성, 지역사회 역량강화(교육) 지원 등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사무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농촌공간계획의 수립과 이행지원에 관한 업무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

○ 수탁기관: 평창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

라. 위탁시설 개요

○ 해당없음

마. 민간위탁기간

○ 위탁기간: 2026. 1. ~ 2028. 12.(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5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2026년 당초예산 410백만원 계상 예정
 - 시군역량강화사업 400백만원(국비 280, 군비 120)
 - 평창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 위탁금 10백만원(군비)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과 중앙정부, 주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업 기획부터 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핵심 추진 주체이자 성공적인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직으로
- 평창군 농촌협약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과 행정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평창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사업계획 및 목표관리
 - 전담 사업인 시군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차년도 예비계획서 수립 절차를 통해 상위기관의 검토 의견 등을 반영함으로써 사업 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평가
- 사업수행 및 중간지원 역할
 - 계획 대비 사업 추진 실적은 양호한 편이나, 사업 수행 외 중간 지원 기능 중 주민 간 소통 촉진 역할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해당 기능의 강화가 필요
- 조직 운영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 조직 내 효율적 업무 배분과 직무 적합성이 높은 교육 이수를 통해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조직 전문성 향상에 노력한 것으로 평가

○ 예산집행 및 관리

- 최근 2개년 예산집행률은 2023년 91%, 2024년 95%로 평균 93%를 기록하며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2024년도 정산은 회계법인의 외부 검토를 거쳐 집행 투명성 확보에 노력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과 확산 및 지역사회 활성화

- 전년도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활동가 양성(20명), 찾아가는 주민공동학습회 운영(3개 마을),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12개 단체, 누적 참여자 수 5,536명) 등 구체적 성과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 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사업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필요

○ 총평

-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 인사·복무관리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적극 노력함
- 2023년부터 3년간 수탁기관으로서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확보해 왔고, 계약위반 등의 문제도 없었으므로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평창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차.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위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기간	내용	비고
2023. 1. 11. ~ 2025. 12. 31.	농촌협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최초) (수탁기관: 평창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	

2026. 1. 1 ~ 2028. 12. 31.	평창군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재계약) 추진 (수탁기관: 평창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	예정
----------------------------	--	----

○ 관련자료

- 평창군-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서(2022. 7. 15.)

<p style="text-align: center;">농촌 협약서</p> <p>농림축산식품부와 평창군(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농촌지역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농촌협약을 체결하며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p> <p>제1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류·협력하는 등 농촌협약 이행에 적극 노력한다.</p> <p>제2조(협력사항 등)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축산식품부는 평창군이 수립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협약 대상사업(이하 “협약 대상사업”이라 한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비를 지원한다. 2. 평창군은 협약 대상사업, 연계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비를 편성하고 지원되는 국비와 함께 사업 목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약의 이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창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평창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양 기관은 협약내용을 이행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p>제3조(협약사업 등) 협약 대상사업, 연계사업 등의 내용과 범위는 부속서에 따른다.</p>	<p>제4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5년(2022~2026년)으로 한다. 다만, 예산 미편성, 사업 종료 등의 중대한 사유 발생 등으로 협약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 기관의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p> <p>제5조(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양 기관이 합의하여야 한다.</p> <p>제6조(비밀 유지) 양 기관은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한 사항과 공유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양 기관의 동의에 의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p> <p>제7조(협약서 작성 및 보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 간에 협약서(세부규정 부속서 포함)를 작성·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2년 7월 15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황근</p> <p><u>정황근</u></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평창군 군수 심재국</p> <p><u>심재국</u></p> </div> </div>
---	--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평창군 농촌협약 부속서</p> <p>제1조(목적) 이 부속서는 양 기관이 농촌협약서와 평창군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협약 대상 생활권) 양 기관은 평창군 남부생활권(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을 지원한다.</p> <p>제3조(협약 대상사업) ① 양 기관의 협약 대상사업은 별표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협약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약 대상사업은 협약 체결 이후 주가할 수 없으며, 사정상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포기할 수 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보조금 관련 법령과 사업시행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한다. 3. 기본계획, 시행계획, 사업계획서 수립 등의 단계에서 개별사업 시행지침, 가이드라인 등에서 정한 조건을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국비 예산을 지원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 4. 협약기간 동안에 협약 대상사업이 부득이하게 폐지 또는 종료, 예산 미편성, 예산 감액, 편성된 경우에는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 	<p>제7조(이행권리) ① 양 기관은 농촌협약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활성화계획 제6장에서 제시한 집행 및 관리계획 이행 2. 평창군이 마련한 전담부서, 중간지원조직, 농촌협약 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유지·발전 3. 평창군이 제기하는 농촌협약 이행 관련 건의사항 청취 및 해소 4. 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 활용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약 이행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창군에 추진상황, 이행실적, 우수사례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p>제8조(성과관리) ① 양 기관은 농촌협약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활성화계획 제7장에서 제시한 성과관리계획에 따른 협약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약기간 내와 협약 종료 후에 성과목표와 관리계획 등을 점검 또는 평가할 수 있으며, 평창군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제9조(기타) 협약서 및 부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p>
--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이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 제2704호, 2021.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역 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간지원조직”이란 평창군민과 행정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평창군민

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추진단, 센터 등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군이 정책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간지원조직 의무)

- ① 중간지원조직은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중간지원조직은 관계 법령과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중간지원조직은 수탁 받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군의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한다.
- ④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추진 및 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지원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이 보조금 지원 목적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대상사무)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검사·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
2. 환경기초시설
3. 문화·관광·체육시설
4. 공원·녹지시설
5. 보건·건강증진시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등 관련 시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8.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

제7조(의회의 동의)

-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4.12., 2023.2.3.>
- 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6.30.>